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문제

The Introduction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Database & Multimedia Industry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Shin, kak-chul./Ministry of Legislation, Legislative
Research Officer.

필자가 이책자(데이터베이스 월드)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보호문제를 계속 연재하면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筆者註 >

사례 :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독 자들로 부터 전화상담 또는 직접 찾아오면서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대표적인 사례만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20대 청년 몇사람이 모여서 「백두산정보시스템(가명)」이라는 소프트웨어하우스와 데이터베이스사업체를 차렸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으나, 이들은 최근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런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백두산정보시스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산정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시청, 구청, 군청, 학교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필요한 요소, 즉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건비, 자재가격, 물가상승률 등 수치만을 대입하면 건설공사의 종별·내용·규모에 따라 예정가격이 산출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시청·군청·기타 공공기관에서 많은 수요를 확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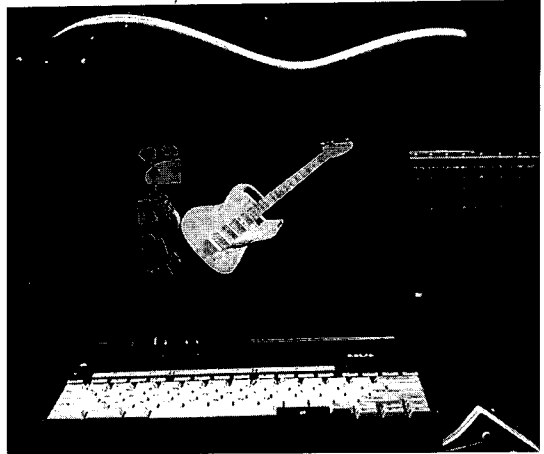
그러나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다. 즉 때때로 변동되는 건설관계 기자재의 가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해 달라는 일선 공무원 등 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들은 많은 투자를 하여 「건설물가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여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물가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수천건의 물품에 대한 공인(公認)된 표준가격을 산정하여 요소(소재)로서 제공해야 신빙성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공인된 표준가격산정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기본적인 품목은 조달청 또는 한국은행등에서 조사하여 발표되지만, 세세한 물품까지 조사하여 발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회사에서 조사하여 작성하는 물가정보자료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즉 민간회사에서 출판하는 「물가정보誌」를 발간하는 회사와 마찰을 빚게 된다. 회사측에서는 이들 물가자료誌를 작성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는 바, 물가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유통됨에 따라 책자가 팔리지 않고 손해를 입게됨은 당연하다.

따라서 물가자료誌를 발간하는 회사측에서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을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화추진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등 첨단정보시스템에 그 소재가 되는 정보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제작된 공인된 물가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면 위의 「물가정보데이터베이스」는 제작할 수 없다. 이와같이 특정 정보의 독점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보화의 '걸림돌'로서 많은 국민이 인류공통의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정보화사회의 실현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법정사용허락제도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 그 밖에 저작권 위탁관리 등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등에 뉴미디어 소재로서 이용되는 기존의 저작물(개개의 정보)에 관한 권리처리문제는 제작자와 권리자사이에 새로운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앞으로 정보처리기술이 발달, 보급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대량의 디지털·데이터처리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용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소재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문화적



소산인 저작물을 공정히 이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적절하고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원저작권자의 지나친 절대적·독점적 권리의 행사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등의 제작자 및 사용자는 저자권자와 필요한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허락된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저작물의 사용형태는 복제, 개변, 송신 등 여러형태의 사용이 뒤따라야 하며 저작자의 명예·성망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작인격권에 해당되는 동일성 유지권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 즉 이용범위의 확대이다.

셋째는, 저작물에 대한 적절하고 원활한 권리 처리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그 많은 저작권자를 상대로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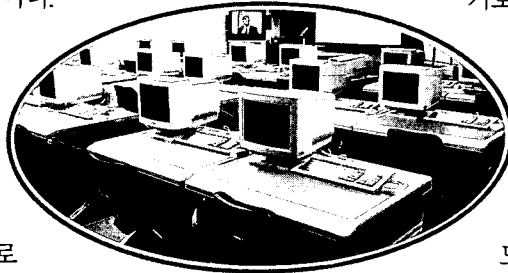
따라서 권리의 「집중처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저작권권리정보집중기구(가칭)」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이 기구는 모든 저작물을 목록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권리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이용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집중관리기구에서는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사용료, 새로운 이용형태등을 마련하고 이용창구의 단일화를 실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저작권법상 위탁관리제도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권등을 신탁받아 관리하

거나 권리행사의 대리나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저작권법제78조).

오늘날 저작물의 이용관계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많은 권리가 발생하게 되었고,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직접 거래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위탁을 받아 그들의 권리를 집중적으로 대행·관리함으로써 권리자는 물론 또한 저작물 이용자에게도 편리한 제도이다.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시대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제작에 이용되는 저작물을 일일이 저작권자 개인으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번



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위탁관리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취지는 계약의 대행, 수수료 징수 등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자를 위하여 권리행사의 대리나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업자와 직접 「사용허락계약」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일본 등 외국의 사례

일본의 경우는 비교적 저작권집중관리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현재 저작권단체는 약 50개가 되며, 이 조직에 참여하는 단체·개인이 연 1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실시하고 있는 위탁관리 업체는 4개단체이다. ①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 ② 문예작가등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 업

무를 처리하는 「일본문예저작권보호동맹」, ③ 주로 방송에 쓰이는 각본·비디오등을 관리하는 「일본각본가연맹」, ④ 주로 극장용 영화의 시나리오, 각본을 관리하는 「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위탁받은 저작물의 이용방법, 사용료의 산정방식등을 정하여 저작물의 집중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위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상호간에 정보교환, 연구추진을 위하여 「멀티미디어에 관한 연락협의회(가칭)」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준비위원회 사무국에는 「저작권센터」를 설치하고,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를 비롯하여 각 출판사·컴퓨터회사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상호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협회, 저작권협회 등 단체가 조직되어 있으나 각 단체 상호간에 정보의 교류나 저작물이용방법등에 관한 공동연구조직체로서 「연합회」의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저작물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저작물의 법정사용허락 제도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그 밖에 첨단 뉴미디어 영상산업등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고속정보화추진의 핵심과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조사하여도 ① 저작권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통상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예컨대, 일정수준의 사용료,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허락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③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공공의 이익에 크게 도움을 주며, 비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공익 데이터베이스)등에 대해서는 「법정사용허락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사용허락제도의 도입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방법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허락제도(법제47조)이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즉 저작권자 불명의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권자와 협의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허락을 신청할 수 있다(법제48조).

앞에서 제시한 「공익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의 경우는 실제로 방송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중통신망에 의한 정보의 제공, 공공의 이익등을 감안할 때 방송사업자에 준하여 법제도의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공표된 저작물의 번역·발행, 판매용 음반의 제작등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했고, 저작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강제허락을 받을 수 있다.

강제허락의 방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승인받은 범위내에

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법제49조).

둘째의 방법은 '심의위원회의 「조정제도」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다같은 지적소유권법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반도체법'이라 약칭)에 이와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반도체법제13조).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의 제작자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인류공통의 문화유산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이들 제작자가 저작권자에게 통상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이다.

예컨대, 지나치게 시세에 맞지 않게 비싼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사용기간, 그 밖에 사용조건등이 통상의 상거래와 어긋나게, 즉 지나치게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반도체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고, 그 재정결과에 따라 배치설계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회의 확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 불명등의 경우에만 강제허락이 인정될 뿐 불공정행위에 대한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에서 이용허락을 하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다(저작권법제82조).

맺음말 :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출판협회 등의 기능강화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다가오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시대에 있어서 지적소유권의 보호·강화도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적절하고 원활한 사용허락제도가 필수적 과제이다. 이와같이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소유권의 권리보호와 이용편익이라는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편익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권리보호가 미흡하여 창작활동이 위축된다.

한편 권리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류공통의 문화적소산을 골고루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의 정비와 일정한 요건아래 법정사용허락제도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물의 집중관리가 법적·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를 법정기구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위탁관리는 물론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표하여 저작권협회 또는 출판협회와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베이스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저작권협회, 출판협회등은 상당기간 오래전에 설립되어 회원의 권리보호와 아울러 출판문화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국정목표인 "세계화" 실현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 시켜야 하고, 그 뒷받침이 "정보화사회"의 획기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정보통신산업,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DC